

##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1. 9. 19.(월) 15:30

## 2. 장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### 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원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## 신용섭 상임위원

## 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#### 4. 불참위원 : 없음

## 5. 회의내용

## 1 성원보고

2 국민의례

### 3 개회선언

####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## 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## ⑥ 의결사항

### 가.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종합대책(안)에 관한 건 – (2011-51-173)

-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전자파가 인체 및 기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「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종합대책(안)」을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내용

#### ① 추진배경

-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 및 방송에 주로 이용되던 전파가 교통, 의료, 과학, 공공 안전 등 사회 전분야로 이용이 확대
-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와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대
- 전자파가 인체, 기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,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

※ 추진근거 : 전파법 제44조의2(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)

#### ② 주요대책(안)

##### ㉠ 인체보호 대책

-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규제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

※ 확대 검토 무선기기 : 태블릿PC, 노트북, 가정용 무선전화기, 무전기 등

- 현행 머리에 대한 보호기준을 머리 · 몸통 · 팔다리 신체 부위별로 보호기준 세분화

- 전자파 측정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을 방통위(국립전파연구원)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

##### ㉡ 기기보호 대책

- 전자기기의 빨달에 따라 현행 1GHz 이하 주파수에 적용하던 전자파적합성 규제 주파수를 6GHz 까지 확대

- 현행 기기단위 전자파적합 인증 대상을 대형 복합설비로 확대하는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

- GPS 전파 교란 및 고출력 전자기파(EMP) 공격 등 물리적인 전파 공격에 대한 방어기술 개발 및 보호기준 마련

#### ④ 인체영향 연구 및 대국민 홍보

-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가전제품 등 생활기기의 전자파 방출 실태 조사 및 결과 발표
-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방식을 현재까지 진행된 단기간 일회성 연구에서 중장기 전향적 연구방식으로 확대 추진
- 어린이·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 마련 및 가전제품 등 생활속 전자파 방출 기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홍보
- 휴대전화 매뉴얼에 어린이·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 및 경고문 포함 의무화 방안 검토
-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·홍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전담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

#### ⑤ 우주전파 관측 및 예·경보 체계 강화

- 방송·통신 서비스 보호를 위해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파 관측과 예·경보를 전담할 제주 우주전파센터 구축('11.11월 개소 예정)
- 우주전파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
- 24시간 태양활동 감시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

#### ⑥ 전자파 차폐·차단 및 저감기술 개발 강화 및 전자파 기술 자격제도 도입

#### ⑦ 주요과제 추진일정

-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 확대 및 신체 보호부위 세분화 : '11년
-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 및 생활기기 전자파 조사 : '12년
- 전자파엔지니어링 제도 도입 : '13년
-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중간 결과 발표 : '15년

#### 나.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유플러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- (2011-51-174~176)

-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피신인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 U+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, '11년 1~6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침해하는 등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을 위반한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 U+에 대해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'시정조치'와 '과징금(SKT 68.6억원, KT 36.6억원, LGU+ 31.5억원)'을 부과하기로 의결함
  - 아울러, "위반행위 재발시 3회 위반에 해당되어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를 적용한다는 점, 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과열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"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'서면경고'하기로 의결함

※ 수정내용 : ‘서면경고’ 내용 중 ‘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과열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’을 ‘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과열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’으로 수정하여 의결함

## ○ 주요 내용

### ① 조사결과

㉠ (위반율 분석결과) ’11년 1~6월 이통 3사의 전체 가입 건 1,212만여건(기기변경 가입 건 포함, 이하 같음) 중 45만건을 분석한 결과,

- 이통 3사 모두 ’10.9.24. 의결 건 대비 위반율이 다소 하락

※ 방통위는 ’10.9.24. 의결된 “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”에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위법하다고 판단

#### < 위반율 비교 >

구 분	’10년 의결 건(’09년 1 ~ 6월)	본 건(’11년 1 ~ 6월)	증 감
SKT	47%	40.0%	△ 7.0%
K T	49%	38.5%	△ 10.5%
LGU+	48%	45.2%	△ 2.8%

- 이통 3사 각각의 위반율은 LGU+ 45.2% → SKT 40% → KT 38.5% 순으로 LGU+의 위반율이 가장 높으며, 위반율 2위인 SKT와 5.2%, 3위인 KT와 6.7% 차이로 ’10.9.24. 의결 당시보다 3사간 위반율 차이가 큼

㉡ (시장 모니터링 지표) 시장혼탁 주도 사업자를 식별할 목적으로 이통 3사와 협의를 거쳐 “시장 모니터링 지표”를 4월3주부터 시행

- 지표상 누적별점은 LGU+ 407점, SKT 358점, KT 317점으로 나옴

※ 벌점은 ①KAIT 이용자보호센터의 보조금 모니터링 결과, ②번호이동 순증 가입 건수 순위, ③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종합하여 산정

㉢ (영업 행태)보조금 지급은 단말할인, 가입비·채권보증보험료 면제와 현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

- 특히, LGU+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베가X, 옵티머스 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(3만원)와 보증보험료(2만원)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실시

※ LGU+의 1 ~ 6월 전체 가입 건(기기변경 포함) 2,195,057건 중 동 정책이 적용된 건은 가입비 면제 382,015건(전체의 17.4%), 보증보험료 면제 1,614,683건(전체의 73.6%)

㉣ (조사방해 사례) 노트북에 부착한 임시보관용 봉인을 훼손하고, 제출 요구한 단가표를 조작 후 제출하거나(이상 LGU+), 이메일로 조사대응 지침을 관련 직원들에게 발송한 사례(KT) 등이 있었음

## ② 근거법령

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[별표 3] V. 5호 가목은 “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”하는 행위를 금지

————— <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> —————

- ◆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5.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
- ◆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① [별표 3] V. 5.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 - 가. 전기통신역무의 요금, 번호,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

## ③ 시정조치

- ㉠ 금지행위의 중지 : 가입자(기기변경 가입자를 포함)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
- 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: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이통 3사의 사업장, 대리점에 10일간 공표
- ㉢ 업무처리절차 개선 :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,
  - (i)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·판매가·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,  
※ 특히, 단말기 보조금 기재시 약정보조금 / 할부지원금 / 단말할인 / 약관외 요금 할인 / 현금지급 / 사은품 등 제공유형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시
  - (ii) 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 출고가·판매가·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별도 관리하고, 미입력시 개통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하며,
  - (iii)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·판매가·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통위 요청시 주 또는 월 단위로 제출하고,
  - (iv)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·판매가·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검증하고, 허위 입력시 관련 직원 및 유통망을 제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며,
  - (v) 단말기 보조금 지급유형 중 가입비·할부보증보험료 면제, 현금지급, 위약금 대납 등에 대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

⑤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 :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상의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, 각 시정조치 이행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

④ 과징금 부과 : 총 136억 7천만원

- SKT : 68억 6천만원, KT : 36억 6천만원, LG U+ : 31억 5천만원

⑤ 서면경고

- 이통3사에 (i)위반행위 재발시 3회 위반에 해당되어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를 적용한다는 점, (ii)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과열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서면경고

## ⑦ 보고사항

### 가. 「공익적 목적의 정보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재난·선거·보훈 등 대국민 안내정보, 공익행사 등 공익적 목적의 정보에 관한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한 「공익적 목적의 정보」(고시) 제정안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
- 주요내용

#### ① 고시 제정내용

① 기존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고지하고 있는 정부시책, 민생정보 등 공익적 목적의 정보 안내에 대한 자막고지의 법적 근거 마련

- 재난, 질병, 세무, 선거, 보훈정보 등 정부시책 관련 정보
- 수도·가스중단, 성금모금,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정보

② 방송사업자의 자막고지 관련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 마련

- 방송사 자사 직원채용, 자사 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
-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방송사가 주최·주관 또는 후원하는 '공익행사'

<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‘공익행사’ >

- 문화예술(음악회, 연주회, 뮤지컬, 오페라, 무용, 콘서트, 판소리, 풍물, 창극, 마당놀이, 연극제, 영화제 등)
- 서화전, 미술전, 사진전 등
- 지역복지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
- 스포츠 행사
- 교육관련 행사(강연회, 강습회, 경진대회, 역사·문화탐방 등)
-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행사로 인정하는 행사

② 향후 계획

- ‘11. 10월 : 입법예고, 관계자 의견수렴
- ‘11. 11월 : 위원회 의결 및 고시

나. (주)KT의 PCS사업(2G 서비스) 폐지 계획에 관한 사항

- (주)KT가 PCS사업(2G 서비스) 폐지 승인을 재신청함에 따라 신청내용과 처리계획 등을 황철중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
- 주요내용

① 배경

- KT가 PCS사업(2G 서비스) 폐지 승인을 재신청(‘11.7.25)함에 따라, KT PCS사업 폐지를 위한 승인 방식을 보고드리고, KT의 PCS사업폐지 계획을 수정하여 접수  
※ KT 2G 이용자 수 추이: 110만명(‘11.3) → 81만명(‘11.5) → 34만명(‘11.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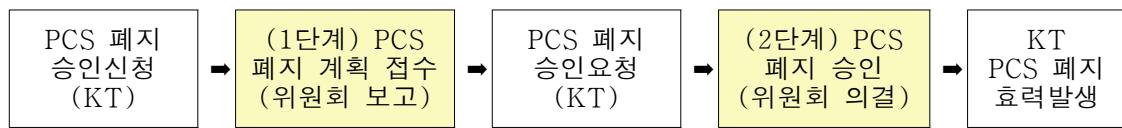
② KT의 PCS사업 승인 방식 : 2단계 방식(계획 접수 → 폐지 승인)

- ① (1단계) KT의 PCS사업 폐지계획(이용자 보호계획 포함)을 접수하고, KT는 동 계획에 따라 가입전환 실시

- KT는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이 경과하고, 가입전환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폐지 승인을 방통위에 요청

- ② (2단계) 방통위는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여부, KT의 성실한 가입전환 노력 등을 검토하여, PCS사업 폐지승인 여부 결정

< KT PCS사업 폐지 절차 >



### ③ KT의 PCS사업 폐지계획 접수

#### ① KT의 PCS사업 폐지계획 주요내용

- (사업폐지일) '11년 9월 30일 PCS사업을 종료할 계획  
※ KT는 현재 PCS용 주파수 1.8GHz(20MHz 대역폭)를 LTE용으로 사용하고자 함
- (이용자 통보) 주요 일간지, KT 홈페이지 등에 PCS 폐지에 대해 공지하고, SMS,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개별통보 실시
- (이용자 보호계획) KT 3G로 전환할 경우 요금할인, 무료단말기 등을 제공하고, SKT 및 LGU+로 전환할 경우 현금을 지급(73천원)할 계획

<이용자 보호계획, 후불 이용자(29만명, '11.8월) 기준>

구 분	자사전환(KT 2G→ KT 3G)	타사전환(KT→SKT, LGU+)
가입비	·3G 가입비 24천원 면제	·가입비 30천원 환불
단말기	·무료 단말기 제공(25종)	·기존 단말기 33천원 보상
요금할인	·월 6,600원(24개월)	—
기타	·동일·유사요금제 제공 ·마일리지, 장기할인 승계	·교통비 10천원 지급
합 계	·461~1,038천원 수준 지원	·73천원 현금 지급

#### ㉡ 전문가 자문단 의견

-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하고,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LTE 투자를 위한 PCS사업 폐지의 타당성은 인정됨
- 자사로 전환하는 이용자 위주로 보상한 국내외 사례 고려 시, 타사 전환 시에도 일부 지원하는 KT 계획은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

#### ㉢ 검토의견

- 국내외 사례, 전문가 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KT의 이용자 보호 계획은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
- KT가 이용자 보호계획을 실시하도록 KT의 PCS사업 폐지 계획을 접수(단, KT가 회망하는 폐지 예정일('11.9.30)은 제외)
- KT는 동 계획에 따라 이용자 통보 및 가입전환 등을 추진하고, 계획 접수 시점 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, 가입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폐지 승인을 요청
- 방통위는 향후 KT의 폐지 승인 요청 시, KT의 성실한 가입전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

④ 향후 일정

- '11. 9월 중 : KT PCS사업 폐지 계획 수정 접수 통보
- '11. 11월 이후 : KT의 PCS사업폐지 요청 시, 승인여부 결정(위원회 의결)

**[8] 기 타**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. 9. 28(수).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

**6. 폐 회 (17:50)**